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77
제11호 (2009-11) 발행일 : 2009. 11. 20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 및 정책과제

-국세청은 200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우선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였음.

◇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면세점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조세정책 관점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복지정책 관점에서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소득보장제도'로 표현됨.
- 제도 운영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기초로 연간 1회 급여신청(5월)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9~10월)이 이루어짐.

1.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최초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1)]

가. 근로장려금 신청

□ 전국에서 총 72만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천 가구 대비 90.9%의 신청률을 보임.

○우리나라 전체가구(1,667만 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1,032만 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임.

신청 가구(A)	전체가구(B)	근로자가구(C)	점유비	
			A/B	A/C
72만	1,667만	1,032만	4.3%	7.0%

자료: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만2천 가구(40.3%), 일용근로자 31만7천 가구(43.8%), 상용+일용근로자 11만5천 가구(15.9%)로,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구 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상용
신청가구	724천	292천	317천	115천
(비율)	100%	40.3%	43.8%	15.9%

자료: 국세청

1) 근로장려세제 신청결과 및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업종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업(26.7%), 도소매업(15.6%)이 많은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만8천, 34.7%)과 음식숙박업(3만7천, 10.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 분	계	제 조	건 설	도 · 소매	음식 · 숙박	기 타
상용근로자	360천	96천	39천	56천	12천	157천
(비율)	100%	26.7%	10.8%	15.6%	3.3%	43.6%
일용근로자	340천	61천	118천	47천	37천	77천
(비율)	100%	17.9%	34.7%	13.8%	10.9%	22.7%

자료 : 국세청

□ 전체 신청가구 중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세대가 20만7천 가구(28.6%)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근로빈곤층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에 효과적으로 나타남

신청가구	부부세대	한부모세대
724천	517천	207천
(비율)	71.4%	28.6%

자료 : 국세청

□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만9천 가구(44.1%), 2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40만5천 가구(55.9%)로 나타남

구 분	계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신청가구	724천 가구	319천 가구	405천 가구
(비율)	100%	44.1%	55.9%

자료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30대(41.2%)와 40대(43.9%)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 청년층 및 중고령층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이러한 연령층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 62만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나머지 가구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가구	무주택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5천만원 초과
724천 가구	624천 가구	99천 가구	1천 가구
(비율)	86.2%	13.7%	0.1%

자료 : 국세청

□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급여액인 120만원을 신청한 가구(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800~1,200만원인 근로빈곤층)는 19만9천 가구로 전체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0~800만원인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신청가구는 36만1천 가구(49.9%)로 전체 신청가구의 약 50%가 이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임.

신청가구	계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신청가구	724천	361천	199천	164천
(비율)	100%	49.9%	27.5%	22.6%

자료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는 2만7천 가구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함.

나. 근로장려금 지급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총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합 계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1억	비근로자	기타
133천 가구	48천	10천	53천	11천	11천
100%	36.1%	7.5%	39.8%	8.3%	8.3%

자료 : 국세청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임.

□ 체납세액 충당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가구의 규모는 51천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임

○세법 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근로빈곤층 대책으로서 현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내용

□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추진경과

○근로장려세제는 참여정부 당시(2005년 8월) 도입이 결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말 입법과정에서 1년간 제도의 시행이 유예되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2008년 1월 시행되었으며, 2009년에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음.

□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2008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을 확대하였음

[참여정부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및 입법 당시 선정기준]

【부양아동】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재산기준】무주택 &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지원대상】26만 가구
【예산규모】약 1,300억원 예상
【소득구간】점증(0~800만원)/ 평탄(800~1,200만원)/ 점감(1,200~1,700만원)
【최대급여액】최대 연간 80만원
【급여율】급여증가율 10% / 급여감소율 16%

[참여정부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및 입법 당시 급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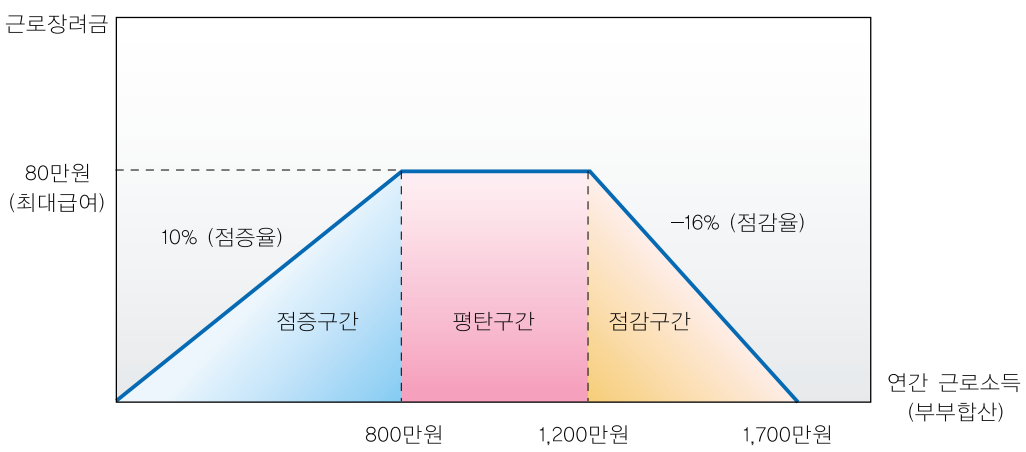

[현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체계 확대 개편내용]

【부양아동기준 완화】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 1인 이상
【소득기준 유지】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무주택 → 소규모 1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용 관련】('07.12.31 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경우 신청 제외

【지원대상 확대】26만 가구 → 63만 가구 (37만 가구 ↑)
【예산규모 확대】1,300억원 → 4,700억원 (3,400억원 ↑)
【소득구간 유지】점증(0~800만원)/ 평탄(800~1,200만원)/ 점감(1,200~1,700만원)
【최대급여액 확대】최대 연간 80만원 → 연간 120만원
【급여율 조정】급여증가율 10% → 15% / 급여감소율 16% → 24%

[현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선정기준 완화 및 확대 개편에 따른 급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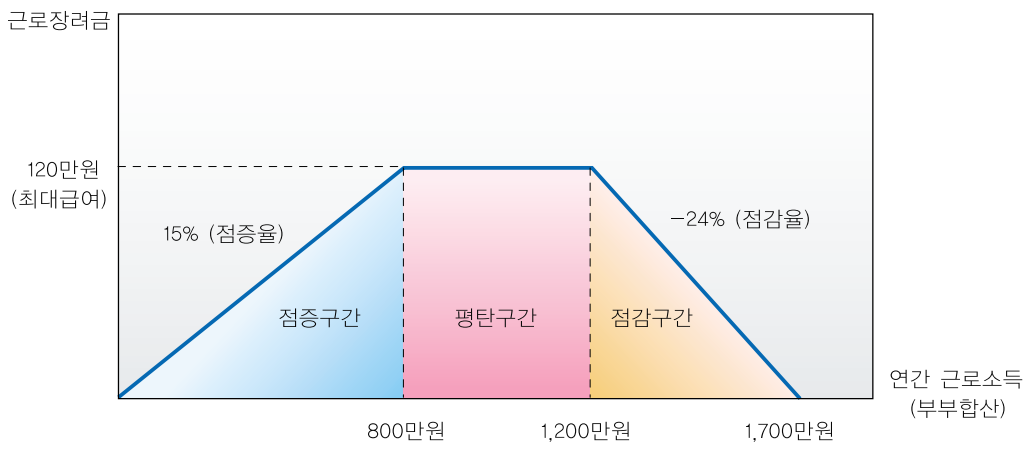

3. 근로장려세제의 지속적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structural) 개편 방안

○자영사업자의 소득 및 매출,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정확한 신고를 전제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기 적용 검토.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중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장려세제인 YEITC(Youth-EITC) / SEITC(Senior-EITC)의 도입을 추진.

□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미시적(parametric) 확대 방안

○근로장려세제 도입모형 설계 이후 상향 조정된 면세점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2,000~2,5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근로장려세제는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기준 1,700만원은 '06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도출한 것임.
- '09년 최저생계비(월 1,326,609원)를 고려한 차상위계층의 연간 소득수준은 19,103,170원에 해당하므로, 현행 소득기준의 상한선은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 면세점 등을 고려하여 2,100~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150%(연간 소득 약 2,388만원)에 해당하는 근로빈곤가구까지 확대 가능.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하여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

- 우선, 점증구간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급여증가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적용대상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자산축적 유도.

- 무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로 완화하였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임.
-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기준시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2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사회보험료 부담(근로자 부담분 약 7~8% 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 연간 최대 근로장려금을 200만원 수준(점증구간 1,000만원 / 급여증가율 20%에 해당)으로 인상해야 함.
- 특히,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체납세액 충당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부양아동 1인과 2인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여 부양아동 수에 따라서 최대급여액, 적용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있어 차등적 급여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가구여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홑벌이 가구와 별도의 급여체계를 구성해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홑벌이 가구의 약 1.2~1.5배)함으로써, 소득세와 달리 부부합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해야 함.

- 근로빈곤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시차를 단축하여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 시점 및 주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 현 수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사항 (ppiji@kihasa.re.kr / 02-380-8146)

[2009년 Issue & Focus 발행 목록]

발행 호수	제 목	저 자	발행일
1호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정경희	9.11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0년의 성과와 과제	김미곤	9.18
3호	건강보험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신현웅	9.25
4호	장애인 소득보장과 정책과제	윤상용	10.01
5호	담배세 인상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강은정	10.09
6호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한 국민의료비와 정책과제	정영호	10.16
7호	OECD국가 행복지수 산정결과로 본 우리나라의 행복수준	김계연/윤강재	10.23
8호	한국의 의료이용 변화추이	도세록	10.30
9호	OECD국가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동향	신윤정	11.06
10호	지속가능한 경제 복지지표; 복지 GDP	홍석표	11.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122-705) Tel 02)380-8000 FAX 02)352-9129 http://www.kihasa.re.kr